

## 세무·회계·경영(TAM) 쟁점뉴스 요약

## 코로나19 피해 법인 "세정지원 혜택 받으세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신고기한 : 3월31 ■ 일)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국세청은 '코로나19'로 ■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기한과 납부 ■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 ■ 극적으로 실시한다.

국세청은 우선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경유한 사업장,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을 수용한지역의 인근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이 연장된다. 중국교역기업은 중국 현지 공장의 운영이 중단된 업체만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 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전했 다.

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3개월이지만,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 이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기업 뿐아니라 일본 수출규 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신 고 기한이 연장된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은 납 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동안 기한 연장이 가 능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이 연장되 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 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가 임대료 깎아줘도 세금혜택 못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기정의 후속 절차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 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 을 거쳐 내달 초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 않는 임차인이어야만, 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 ■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구체적으로 도박게임 등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초·중·고등 교육기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협회·단체 등이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도 포함된다.

또 동일 상가건물을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에 있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의 경우엔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이어야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건물범위에 해당된다.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 등을 올렸을 때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다. 올해 1월 말 이전에 계약한 경우라면, 2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했을 때다. 2월 1일 이후에 계약을 갱신했다면, 같은 기간 당초 금액보다 5% 넘게 올린 경우가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에 들어간다.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에서 소 ■ 득·법인세 감면(소기업 60%, 중기업 30%) 혜택을 ■ 받지 못한 업종도 명확해졌다. 감면배제 업종으로는 ■ 부동산 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변호사 ■ 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및 ■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등이다.

올해 말까지 소규모 개인사업자(6개월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 자 수준으로 내려간다. 단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 주점업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업의 경우엔 5%, 소매업·도매업 10%, 농림어업·제조업·숙박업 20%, 건설업 등은 30%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올해 말까지 적용)으로 올랐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주점은 적용대상 에서 제외된다.

노후 된 자동차를 교체한 후 신차를 구입했을 때의 세금감면 요건 문턱이 낮아졌다.

현재 노후차량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등록해야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추징이 면제되는 사유에 '공장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생산지연으로 노후차 말소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등록하지 못한' 경우도 들어간다.

 $2020 \cdot 04 \cdot 01$  www.taxpark.com 15